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0호, 2022.9.14]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2월 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7월 27일 그 결과를 [붙임2], [붙임3]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

II. 부과 내용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μ 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다만, 금속 등의 증착,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중국	1.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더저우동홍”)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Canzhou Donghong Packing Material Co., Ltd. (이하 “창저우패킹”) - Can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 Technology Co., Ltd. (이하 “창저우필름”) - Chongqing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충칭밍주”) - Cangzhou Mingzhu Plastic Co., Ltd. (이하 “창저우플라스틱”)	5.18%
	2. Hyosung Chemical Fiber (Jiaying) Co., Ltd. (이하 “효성자싱”)과 그 관계사인 다음 목의 기업 또는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 - 효성화학주식회사	5.08%
	3. 그 밖의 공급자	5.12%
태국	4. A. J. Plast Public Co., Ltd. (이하 “에이제이피”)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4.81%
	5. 그 밖의 공급자	
인도 네시아	6. PT. KOLON INA (이하 “코롱이나”)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6.71%
	7. 그 밖의 공급자	

- 비고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¹⁾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 비고2: 제1호의 공급자 “더저우동홍”과 “더저우동홍”의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1) 「관세법 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부과기간

- 2022.9.14. - 2023.1.13. (4개월)

5.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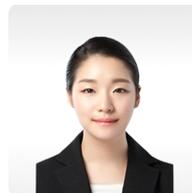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조민지 관세사

T 02-6011-3098
E mjcho@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